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9 발의연월일: 2024. 06. 26.

발 의 자:백혜련·정성호·윤종군

백승아 · 염태영 · 김한규

박희승 • 이병진 • 김영진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등 국어사용이 어려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통역인이 부족하거나 소수 언어 통역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양질의 통역이 적시에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거리나 소수 언어 등의 사정으로 적정 통역인이 법원이나 검찰청·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장치 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증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81조의2 및 제221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1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통역) ① 법원은 통역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역은 통역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통역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역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역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81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에 의한 통역) ① 법원은 통역
	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
	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
	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
	<u>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통역</u>
	<u>하게 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통역은 통역
	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
	진 통역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역의 절차
	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
	역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